

## 울산의 스토킹범죄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sup>1)</sup>

유아랑(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

- 2013년 3월부터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시행하여 스토킹행위를 제재하여 왔음.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로 인식되기 보다는 연인 간의 애정 혹은 구애의 표현이나 개인의 문제로 사소하게 여겨져 왔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10월 시행되면서, 스토킹행위 혹은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 직장동료, 헤어진 연인, 이혼한 배우자, 이웃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을 보면 지속적인 스토킹범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의 스토킹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철저한 피해의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민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과 피해 경험, 피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지역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 ① 스토킹범죄의 개념 및 특성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까지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행위의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피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음.

- 「스토킹처벌법」에서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정의됨.

구분	주요내용
스토킹행위 (제2조제1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li>“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ol style="list-style-type: none"><li>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li><li>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li><li>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li><li>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li><li>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li></ol></li></ol>
스토킹범죄 (제2조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본 BRIEF 33호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22년 기본연구과제인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의 피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 스토킹범죄의 특성

- 스토킹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개인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어도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특성	내용
암수범죄로의 특징 발생	다른 범죄의 피해 속에서 피해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가능성이 있어 행위 형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미비할 가능성이 높음.
지속성·반복성 특성에 따른 강력범죄로의 점증적 형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로 점증적 형태를 띤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발생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는 특징에 따라 추가 스토킹행위 발생소지와 주변인에 대한 피해로 확산, 극심한 불안과 공포로 인한 미신고, 신고취하 등 적절한 대응 어려움.
심리·정서적 피해가 큰 범죄로서 일상유지의 어려움	두려움과 불안, 우울증 등 정신적 후유증과 같은 피해로 이직, 휴학, 이사, SNS 계정 삭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피해로 연결됨.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신고취하, 처벌불원 등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려움.

## ② 울산시민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및 피해 경험과 대응 현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2022년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0대~60대 남녀
- 조사 기간 : 2022년 3월 30일 ~ 4월 12일
- 조사 내용 : 일반적 특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스토킹범죄 피해 경험, 스토킹범죄 피해 대응 현황, 스토킹범죄 관련 정책 수요

### ▶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울산시민들은 대체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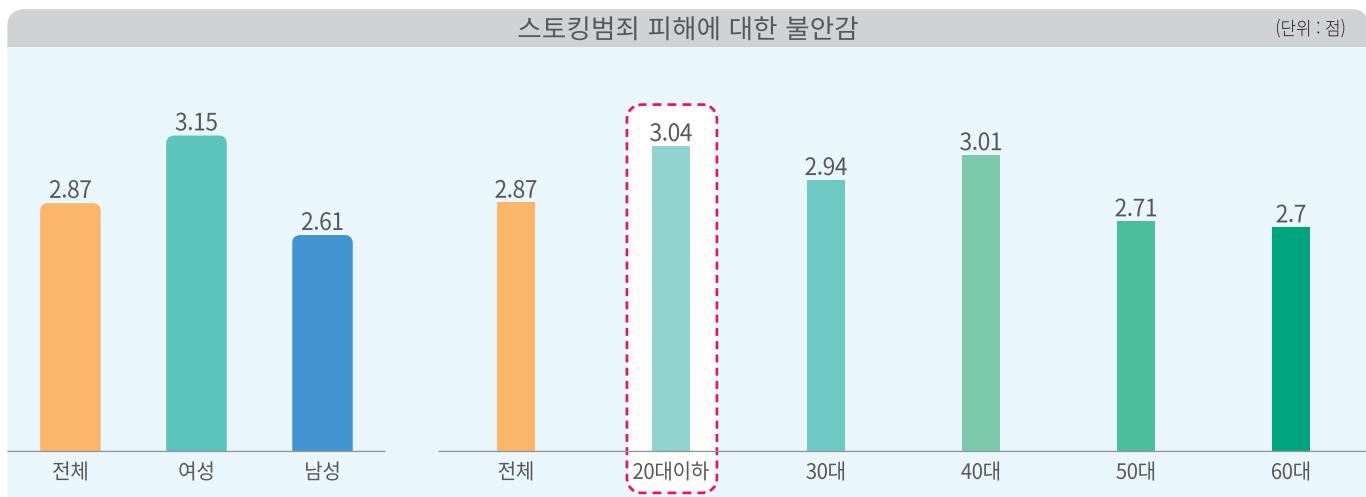
#### ●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 인식

- 울산 시민들은 대체로 스토킹범죄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 그리고 3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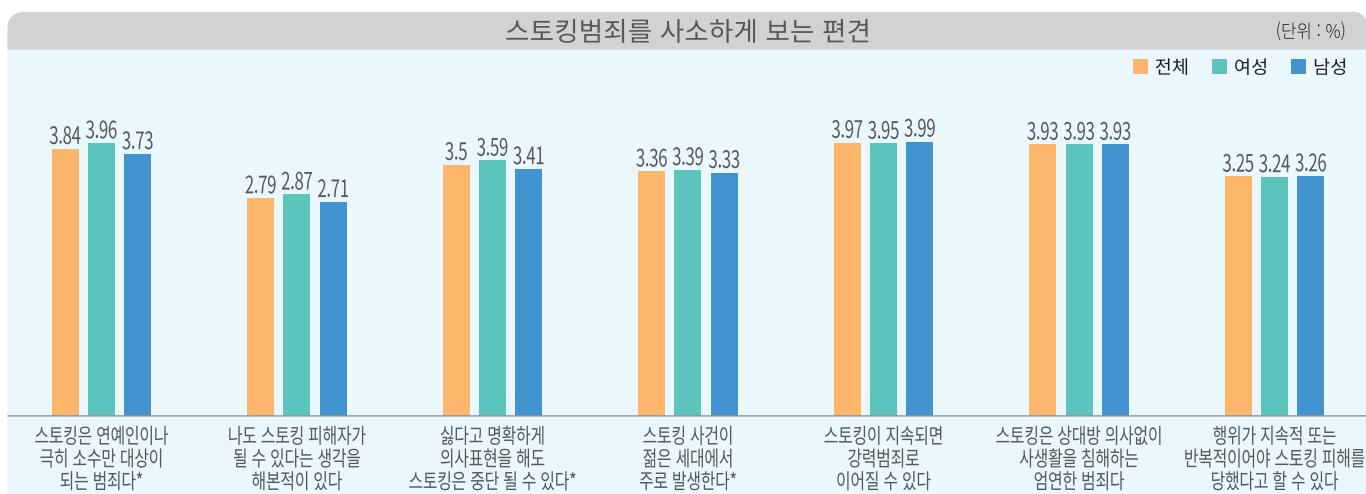
## ● 스토킹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 울산 시민들은 대체로 불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



## ● 스토킹범죄를 사소하게 보는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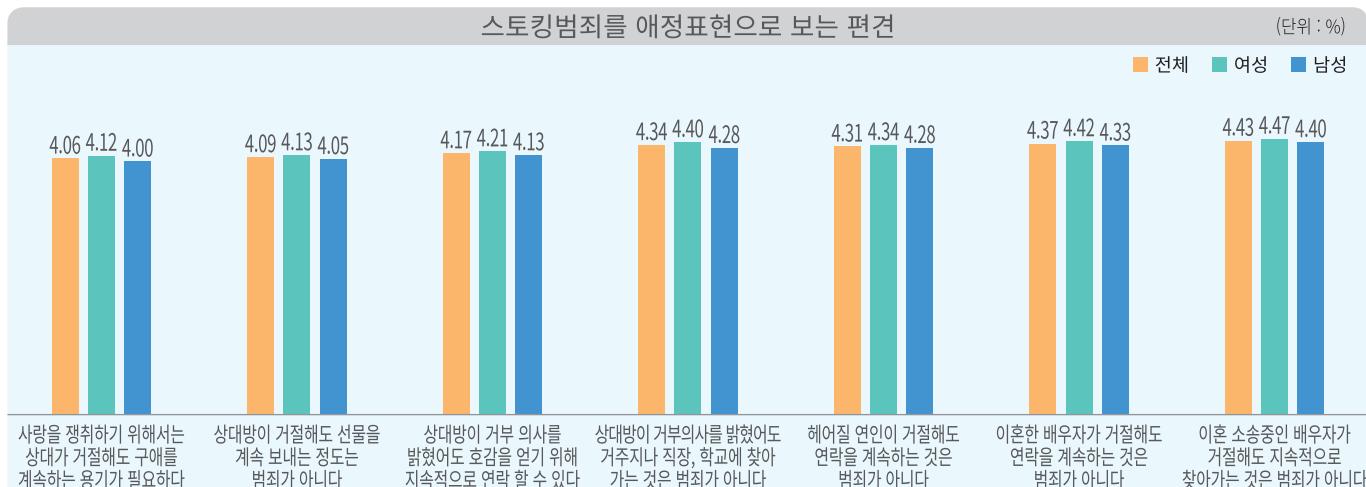
- 울산시민들은 스토킹범죄를 사소한 문제로 보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로 인식함.
-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만 본인이 피해자가 될 우려감은 대체로 낮음.



\*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토킹범죄의 사소화 편견이 낮은 것으로 해석함.

## ● 스토킹범죄를 애정표현으로 보는 편견

- 울산시민들은 상대방이 거절표현을 했다면 과거 혹은 현재의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을 일종의 애정표현으로 보지 않고 스토킹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문항 전체는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그렇지 않다' 4점, '보통' 3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1점으로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거절표현에도 애정표현이 지속되는 것은 스토킹범죄로 보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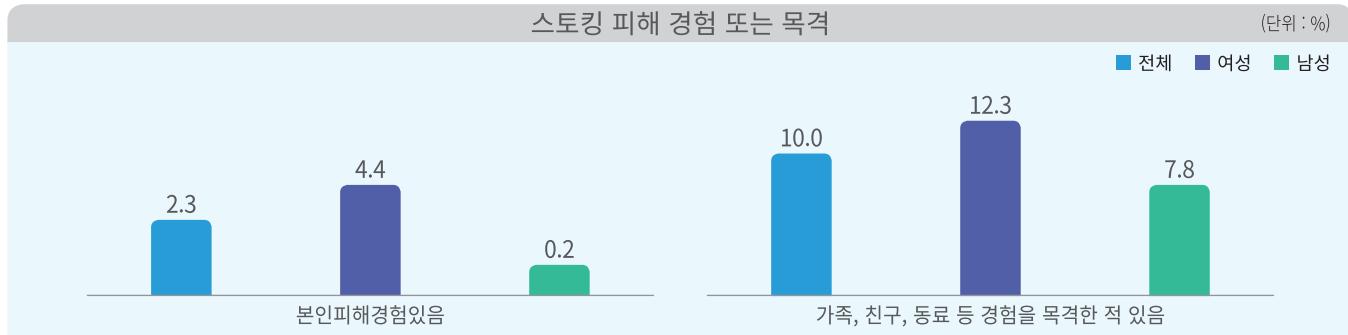
# ▶ 스토킹범죄 피해 경험

## ● 스토킹 피해 경험

- 울산 시민 800명 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토킹이라 생각되는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 가족 및 친구, 동료 등이 경험한 것을 목격한 경우가 10%로 나타남.
-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은 4.4%로 남성 0.2%에 비해 높고, 목격한 경험은 여성이 12.3%로 남성 7.8%에 비해 높게 나타나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 및 목격한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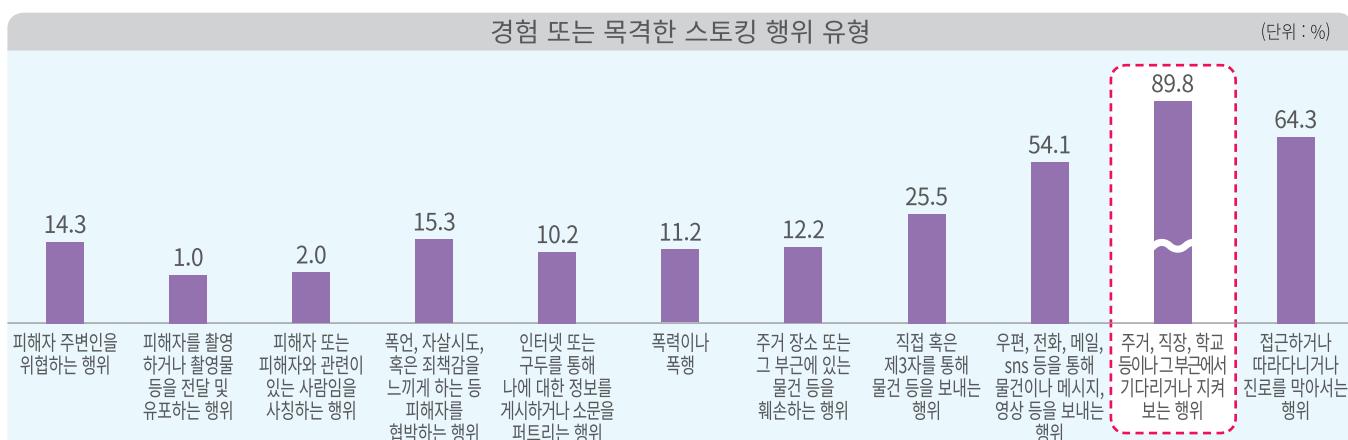
## ● 스토킹 피해 기간

-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기간은 평균 0.68년으로 나타남.



## ● 경험 또는 목격한 스토킹 행위 유형

- 주거, 직장, 학교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89.8%),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64.3%) 우편, 전화, 메일, SNS 등을 통해 물건이나 메시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5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1항의 각 목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를 주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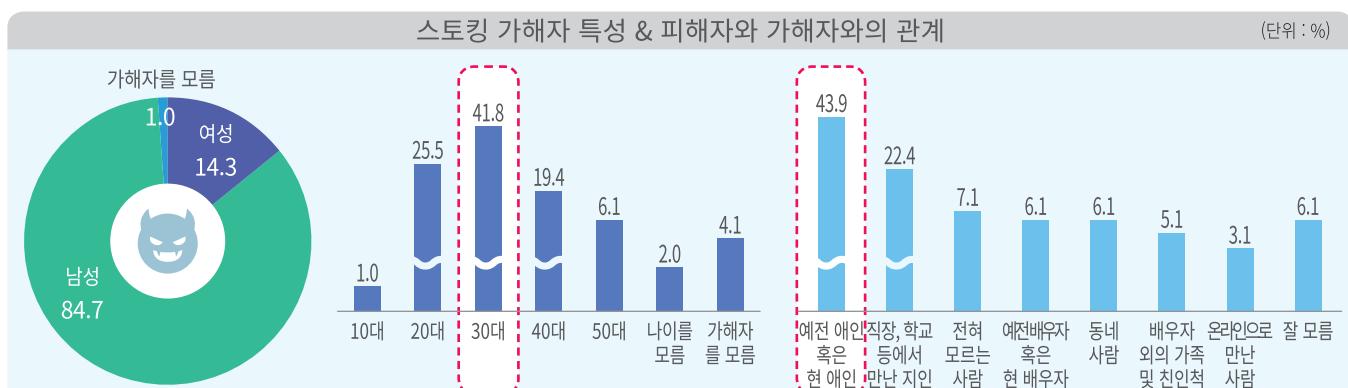


## ● 스토킹 가해자 특성

-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84.7%, 30대가 41.8%로 나타남.

## ●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살펴보면, 예전 애인 혹은 현 애인이 43.9%로 가장 높고, 직장, 학교 등에서 만난 지인 22.4%, 전혀 모르는 사람 7.1%, 예전 배우자 혹은 현 배우자, 동네 사람 각각 6.1% 순임.



2) N=30이하로 통계적 차이에 대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에 따라 단순 현황만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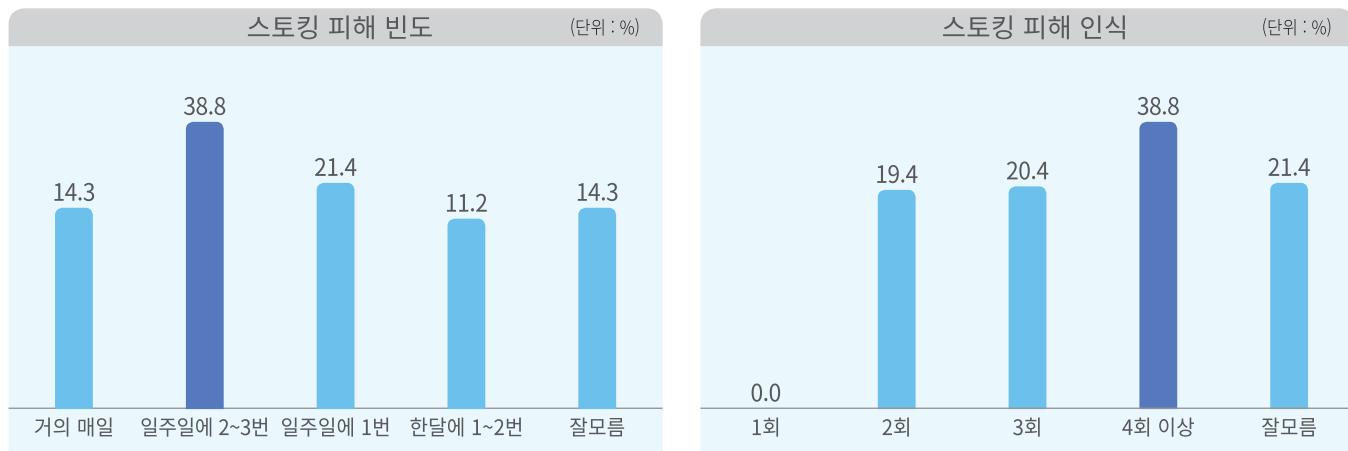
3) 스토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나목, 가목, 다목, 라목, 마목 순으로 나타남.

### ● 스토킹 피해 빈도

-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일주일에 2~3번 피해(38.8%)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번(21.4%), 거의 매일(14.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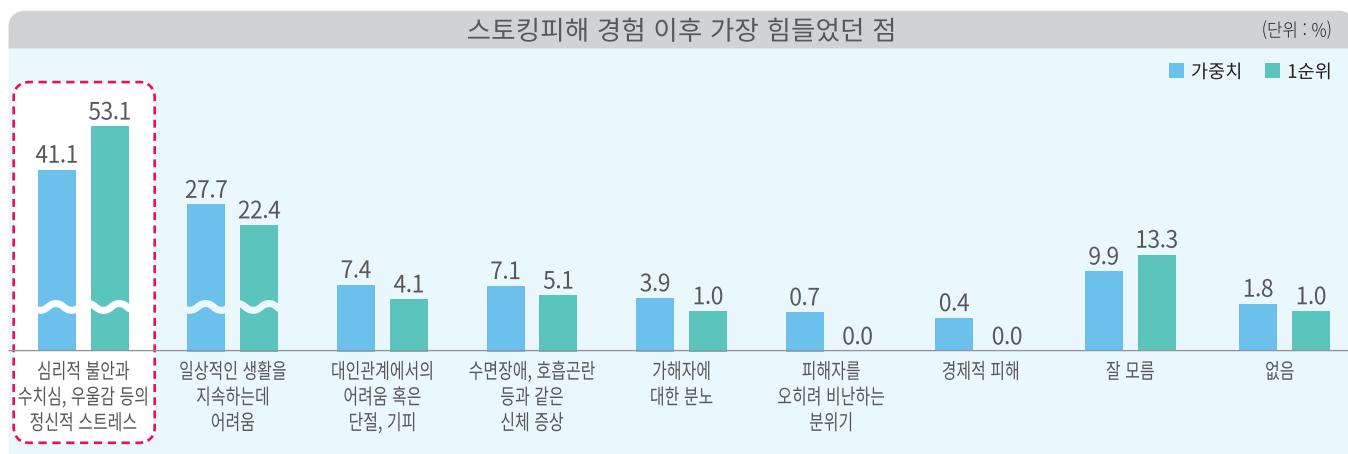
### ● 스토킹 피해 인식

- 피해자들은 대부분 4회 이상(38.8%) 지나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스토킹피해 경험 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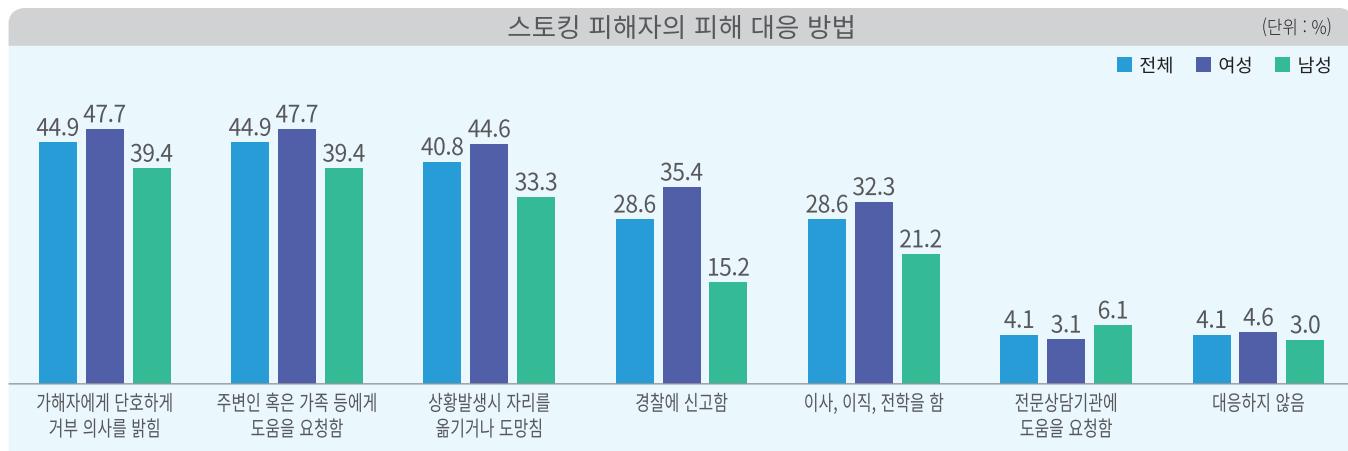
- 피해자들은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우울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41.1%)와 일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27.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스토킹범죄 피해 대응 경험

### ● 스토킹 피해자의 피해 대응 방법

- 피해자들의 피해 대응 방법은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주변인 혹은 가족의 도움을 구하거나, 상황발생 시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치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그에 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낮았음.



### ③ 울산시 스토킹범죄 피해 대응을 위한 정책

- 울산시민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및 피해 경험과 대응 현황을 토대로 울산의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과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인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3대 정책추진 방향과 10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